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95

발의연월일: 2020. 12. 21.

발 의 자: 안민석·강민정·김승원

남인순 • 류호정 • 양경숙

이규민 • 이상헌 • 이수진(11)

이원택 · 장경태 · 전혜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체육특기생 학사특혜와 입시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최저학력에 미도 달한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자 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며, 최저학력의 기준 및 초중고·대학에 대한 적용대상,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학생선수가"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선수가"로,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를 "운영하고 일정기간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준 및 실시 시기에"를 "기준, 적용대상, 실시 시기 및 경기대회 참가 제한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
학교의 장은 <u>학생선수가</u> 일정	<u>학생선수의 학습권</u>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	보장을 위하여 학생선수가
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	
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	<u>운영하고 일</u>
럭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	정기간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
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u>여야 한다</u> .
② 최저학력의 <u>기준 및 실시</u>	② <u>기준, 적용대상,</u>
<u>시기에</u>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	실시 시기 및 경기대회 참가 제
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